



2025 대회운영규정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목 차

제1장 클럽

제1조 클럽의 정의

제2조 클럽의 권리

제3조 클럽의 의무

제4조 클럽의 가입

제5조 클럽의 자격 갱신

제6조 클럽의 자격 상실

제7조 클럽 권한의 양도

제8조 K3, K4리그 참가클럽

제9조 승격과 강등

제10조 가입비 및 연회비

제11조 탈퇴

제12조 연고지

제13조 분쟁의 해결

제14조 분쟁의 효력 및 이의신청

제2장 등록 및 참가신청

제15조 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

제16조 스태프 및 사무국 등록 및 참가신청

제3장 경기

제17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제18조 경기 규칙

제19조 리그 방식

제20조 사용구

- 제21조 시상
- 제22조 경기출전 및 자격
- 제23조 뇌진탕 교체
- 제24조 안전
- 제25조 경기 일정
- 제26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 제27조 경기시간 준수
- 제28조 몰수
- 제29조 실격
- 제30조 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제재
- 제31조 제소
- 제32조 경기중지 결정
- 제33조 재경기
- 제34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 보상
- 제35조 도핑

제4장 장비

- 제36조 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
- 제37조 유니폼 색상 및 문자 표기
- 제38조 착용 의무
- 제39조 선수 이름, 배번 및 마크
- 제40조 협회 패치 및 클럽 광고
- 제41조 상호, 선수, 연고지명 표시
- 제42조 기념 유니폼
- 제43조 전자장비

제5장 AD카드 운영

- 제44조 AD카드

제6장 징계

제45조 목적

제46조 적용범위

제47조 설치 및 구성

제48조 공정소위원회 운영

부칙

별첨 1 유형별 긴급제재 기준표

제1장 클럽

제1조 클럽의 정의

K3, K4클럽(이하 “클럽”)은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 본 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으로 한다.

제2조 클럽의 권리

1. 클럽은 아래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 협회 가맹단체로서의 지위
 - ② 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 및 사업에 참가
 - ③ 협회가 부여한 마케팅 및 사업 권리
 - ④ 기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

제3조 클럽의 의무

1. 클럽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①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협회, AFC, FIFA의 정관, 제반 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
 - ② 협회 주최 또는 주관의 각종 행사 및 교육 참가
 - ③ 국내외 대회 참가 또는 개최에 대한 협회 사전 승인
 - ④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등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 ⑤ 법인단체의 경우, 주주 및 임원 등 주요 변동 사항 보고
 - ⑥ 각종 회비 및 부담금 납부
 - ⑦ 분쟁 발생 시 협회, AFC, FIFA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분쟁은 외부의 법적인 절차가 아닌 축구 구성원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

제4조 클럽의 가입

1. 신규로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K4리그로 가입 된다.
2. 클럽 가입에 관한 사항은 K3.K4리그 클럽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정한 절차에 따르며, 협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 ⑧ 클럽의 경영상태, 중장기 클럽운영계획, 재정보호계획, 사무국 구성계획, 유소년 운영계획
 - ⑨ 지역과의 협력 관계 및 홈 경기장, 연습구장 등에 관한 조사
 - ⑩ 클럽 담당자 및 연고지 지자체 책임자 면담 조사
 - ⑪ 기타 가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3. 제2항에 따라 리그에 가입이 승인된 클럽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클럽의 자격 갱신

클럽은 K3.K4리그 클럽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며, 참가 법인, 팀 명, 팀 해체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시도 축구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사전 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클럽의 자격 상실

1. 제3조 ‘클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클럽 자격이 상실된다.
2. 제1항 이외에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클럽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①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에 의거 리그 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② 구단 의사에 따라 자진 탈퇴를 신청하거나 리그에 불참할 경우
 - ③ 단체가 해산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④ 이 외 지속적인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협회가 판단한 경우

제7조 클럽 권한의 양도

1. 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을 타 단체에 양도할 수 있다.
 - ① 클럽이 타 단체에 인수되거나 합병된 경우
 - ② 클럽이 타 단체에 매각된 경우
2. 클럽의 권한 양도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클럽자격심의위원회는 클럽의 권한 양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K3, K4리그 참가클럽

1. 2025년 K3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이하 ‘K3클럽’)은 15개 클럽, K4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이하 ‘K4클럽’)은 11개 클럽이며, 추후 클럽 수 감소에 따른 세부적인 참가 클럽 수의 조정과 결정은 협회 결정에 의한다.
 - ① K3클럽(15개팀) : 강릉시민축구단, 경주한수원FC, 김해시청축구단, 대전코레일FC, FC목포, 부산교통공사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양평FC, 여주FC, 울산시민축구단, 전북현대모터스N, 창원FC, 춘천시민축구단, 파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 ② K4클럽(11개팀) : 거제시민축구단, 기장군민축구단, 남양주시민축구단, 당진시민축구단, 대구FCB, 서울중랑축구단, 세종SA축구단, 연천FC, 진주시민축구단, 평창유나이티드, 평택시티즌FC

제9조 승격과 강등

1. K3,K4리그 클럽의 승격과 강등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① K3리그 정규리그 최종순위 15위 클럽은 K4리그로 자동 강등된다.
 - ② K4리그 정규리그 최종순위 1위 클럽은 K3리그로 자동 승격된다.
 - ③ 승강결정전은 K3리그 정규리그 14위, K4리그 정규리그 2위 팀 간의 단판 경기로 제19조(리그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승자는 K3리그, 패자는 K4리그에 참가한다.
2. 제1항에 따라 승격이 결정되더라도 K3.K4리그 클럽라이선스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승격이 취소될 수 있다.
3. 승강결정전 포기, 또는 제1항에 따라 승격이 확정된 클럽이 승격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클럽라이선스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은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되며 승점 감점, 홈경기 개최 금지, 보충역 선수 등록 금지, 리그 참가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K3,K4리그 참가 클럽 수의 증감(K리그2 참가, 팀 해체, 리그 참가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에 따른 승격과 강등 클럽 수의 조정과 결정은 협회 결정에 의한다.

제10조 가입비 및 연회비

1. 클럽은 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아래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연회비
 - 가. K3리그 : 4천만원
 - 나. K4리그 : 3천만원
 - ② 가입비
 - 가. 리그 신규참가팀 : 5천만원
2. 가입이 승인된 신규클럽이 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입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3. 기존클럽이 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종 미납 시에는 리그 참가가 취소된다.
4. 클럽이 납부한 가입비, 연회비, 기타 각종 납입금 등은 탈퇴, 제명, 자격상실, 대회 불참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5. 클럽이 납부한 가입비는 K3.K4리그 적립 계좌에 별도 관리하며, 리그운영비 및 리그 발전 사업(구단 행정직원 교육, 연수 등)을 위해 협회가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

1. 클럽이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 전년도 9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서면으로 탈퇴사유를 명시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클럽의 탈퇴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에서 탈퇴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과할 경우 클럽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3. 클럽은 리그 도중에 탈퇴할 수 없으며, 상기 ①항의 절차에 위배하여 탈퇴할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의 양도 등 클럽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협회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4. 협회는 탈퇴 또는 협회 결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클럽에 대해, 소속 선수들의 원활한 이적을 위해 탈퇴승인일(또는 자격 박탈 통보일)부터 통합 온라인시스템(joinkfa.com)에서 해당 클럽의 해체를 진행할 수 있다.
5. 탈퇴 또는 협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클럽은 탈퇴승인일(또는 자격 박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리그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이후 리그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신규클럽 가입 기준에 따라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제12조 연고지

1. 연고지는 클럽이 신규가입 절차에 따라 지정한 지역으로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2. 연고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연고지로 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즌의 전년도 9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서면으로 협회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 시즌 도중 연고지 변경이 불가하다.
3. 연고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클럽은 신규 클럽 가입과 동일한 절차(서류제출 등)를 거쳐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동일 연고지 내에서 추가 창단을 희망하는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고유단체를 법인으로 하는 클럽은 원칙적으로 연고지 이전이 불가하다.
6.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연고지를 둘 수 있다. 보조 연고지는 주 연고지가 속한 지자체의 광역시·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협회는 거리 및 기타 조건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접한 광역시·도 내의 지역도 승인할 수 있다. 단, 기존 K3, K4리그 참가팀이 연고지로 지정한 지역은 보조 연고지로 지정할 수 없다.

7. 리그 참가팀은 보조 연고지에서 최대 30%의 리그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홈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클럽과 소속 선수 또는 임직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분쟁 조정 절차를 따른다.
2. 모든 분쟁 사항은 협회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협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제14조 분쟁의 효력 및 이의신청

1. 분쟁에 대한 협회의 결정은 협회의 관할 범위내에서는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된다. 단, 도핑에 관한 사안은 국제규정에 따라 상소를 인정해야 할 경우 예외로 한다.
2. 협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단, 협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분쟁 당사자가 협회의 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제2장 등록 및 참가신청

제15조 등록 및 참가신청

1. 선수 및 참가팀은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축구협회 통합 온라인시스템 (www.joinkfa.com)을 통하여 등록 및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등록기간은 정기 등록 기간과 추가등록 기간으로 구분한다.
 - ① 정기등록 기간은 1월부터 3월 중 최소 8주, 최대 12주내
 - ② 추가등록 기간은 6월부터 7월 중 최소 4주, 최대 8주
 - ③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 기간의 합은 16주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등록 및 참가 신청 기간은 협회가 지정하여 별도 안내한다.
3. 선수는 클럽당 최소 20명, 최대 5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4. 선수의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기간 종료 후 배번 변경은 불가하다.

단, 선수 이적 등의 사유로 결번이 생길 경우 추가등록 선수에 한하여 결번에 대한 배번 사용이 가능하다.

5. 선수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는 K3.K4리그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6. 이적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

① 등록기간 내에 이적이 완료된 선수에 한하여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있다.

② 보충역 선수는 복무 종료 시까지 이적할 수 없으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소속 클럽이 K3리그로 승격한 경우, 승격 차기연도 등록 기간에 K4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

나. 소속 클럽이 해체한 경우, K4리그 클럽에 한하여 이적할 수 있다.

③ 보충역 선수는 이적 등록일자 기준으로 복무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이적이 가능하다.

7. 외국국적 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

① 등록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 한 해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있다.

② 외국국적 선수는 최대 4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8. 보충역 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

① K3클럽은 보충역 선수를 등록할 수 없으며, K4클럽은 팀당 최대 12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 중, 사회복무요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한다.

② 상근예비역(현역 군복무) 선수는 리그에 신규 등록할 수 없다.

③ 위 ①과 관련한 연도별 팀당 최대 보충역 선수 등록 수는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보충역 선수는 정기 또는 추가 등록 기간 내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속된 복무 기관장이 발급한 겸직허가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기 및 추가 등록 기간 내 등록한 선수에 한해 5월과 9월 협회 업무일 최초 5일간 겸직허가 승인서를 제출하여 협회 승인을 득한 후 참가 신청 할 수 있다.

⑤ 보충역 선수에 대한 관리책임은 소속 클럽에 있으며, 병역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회는 즉시 해당 클럽에 대한 보충역 선수의 참가신청 취소 및 참가신청 불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정소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⑥ 클럽 소속의 보충역 선수가 탈퇴한 경우 전역 또는 소집해제 시까지 해당 리그에 재등록 및 참가 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소속 클럽의 당해년도 보충역 선수 등록 수는 변동되지 않는다.

9. 군 전역(소집해제) 선수 추가 등록

① 군 전역 또는 소집해제 선수는 전역 및 소집해제 일로부터 90일까지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제16조 스태프 및 사무국 등록 및 참가신청

1. 스태프 및 사무국 구분

코칭스태프	팀 지원 스태프	사무국
지도자, 코치, 피지컬코치	팀매니저, 의무트레이너, 팀닥터, 통역 등	클럽임원, 행정직원

2. 코칭스태프, 팀 지원 스태프 및 사무국은 본 규정 15조 2항(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등록 및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등록 시 관련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참가 클럽의 사무국은 코칭스태프 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4. 코칭스태프 등록 및 참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코칭스태프(피지컬코치 제외)는 AFC 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1명과 AFC B급 이상 지도자 1명 또는 AFC GK B급(KFA GK LEVEL 2) 이상 지도자 1명을 반드시 등록 및 참가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구단 사정으로 인하여 감독직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구단 소속 코치(GK, 플레잉코치 제외)에게 ‘감독 대행’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기한 내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③ 피지컬코치는 역할 수행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플레잉코치는 각 팀당 최대 1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은 겸할 수 없으며, 코치에 한하여 겸임 가능
2. 해당 플레잉코치 외 지도자 2명 이상 등록(예. 감독1인 + 플레잉코치1인 체제 불가)
3. 플레잉코치는 경기 중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로 벤치에서 지도 불가

5. 클럽은 반드시 1명 이상 의무트레이너를 등록하여야 하며, 최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의무트레이너의 등록 및 참가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의무 ·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보건복지부), 건강운동관리사(문화체육관광부), 선수트레이너(사단법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운동처방사(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중 1개의 면허 또는 자격을 반드시 소지한 자여야 한다.
- ② 의무트레이너는 선수단 교육을 비롯하여 협회 및 협회 의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의무트레이너는 소속 클럽의 모든 경기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

제17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1. 공식경기는 협회가 주최하고, 홈 클럽이 주관한다. 홈 클럽은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주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공식경기는 협회에서 승인한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단, 홈 경기장 이외의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경기는 경기 개최 시 마다 의무적으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벤트성 경기로 개최되는 경기(울스타전, 자선경기 등)의 개최 경기장 선정, 주최 및 주관 권리는 모두 협회에 있다.
4. 홈경기 운영 미흡 또는 대회운영규정을 위반하여 홈경기를 운영할 경우 공정소위원회 및 클럽자격심 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클럽자격심의위원회로부터 홈경기 개최권 3회 이상 박탈 시 차년도 대회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5. 경기를 위한 살수(Watering)에 대한 권한은 홈 클럽에 있다. 단, 홈 클럽은 아래 표에 지정된 시간대에 한하여 살수할 수 있으며, 경기 시작 9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살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감독관은 해당 살수 계획을 당일 원정 클럽과 심판진에 고지하여야 한다.

구분	시간대	살수 시간	비고
선택	~킥오프 90분 이전	-	
필수	킥오프 60분 전	최대 10분	
선택	킥오프 20분 전	최대 10분	
선택	전반전 종료 직후	최대 5분	전반 종료 직후 살수

제18조 경기 규칙

모든 공식경기는 IFAB 경기 규칙을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 발생 시에는 협회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리그 방식

구분	일정	방식
정규리그	K3리그 (15개팀)	2라운드 로빈 30라운드, 총 210경기 (팀당 28경기)
	K4리그 (11개팀)	3라운드 로빈 33라운드, 총 165경기 (팀당 30경기)
승강플레이오프	승강결정전	11.22. K3리그 14위 vs K4리그 2위

1. 정규리그

- ① 경기장소 : 홈 클럽 경기장
- ② 경기시간 : 전 · 후반 각 45분씩, 하프타임은 15분 이내로 한다.
- ③ 승자결정 :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승점부여는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 ④ 순위결정 : 「승점 - 골득실 - 다득점 - 다승 - 추첨」순으로 한다.

2. 승강플레이오프

① 승강결정전

- 가. 참가대상 : K3리그 정규리그 14위 클럽, K4리그 정규리그 2위 클럽
- 나. 경기방식 : 단판경기
- 다. 경기장소 : K3리그 14위 클럽 홈 경기장
- 라. 경기시간 : 전 · 후반 각 45분씩, 하프타임은 15분 이내
- 마. 승자결정 : 정규시간 무승부 시 K3리그 14위 클럽이 K3리그에 잔류

제20조 사용구

K3.K4리그의 공식 사용구는 ‘스포츠트라이브 F24+’로 지정하며, 각 클럽은 모든 리그 공식 경기 및 훈련에 해당 사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상

각 리그에 대한 단체상 및 개인상의 시상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시상 내역은 변경될 수 있다.

1. 단체상

리그	항목	시상내역	평가기준
K3리그	우승	트로피, 메달, 상금(1억원)	정규리그 우승팀
	준우승	상패, 상금(5천만원)	정규리그 준우승팀
	페어플레이	상패, 상금(3백만원)	페어플레이 점수
K4리그	우승	트로피, 메달, 상금(3천만원)	정규리그 우승팀
	준우승	상패, 상금(1천만원)	정규리그 준우승팀
	페어플레이	상패, 상금(3백만원)	페어플레이 점수
공통	베스트프런트(리그별 1팀)	상패, 상금(각 50만원)	사무국 업무 수행 우수 클럽
	플라이투게더(리그별 1팀)	상패, 상금(각 50만원)	사회공헌활동 우수 클럽
	뉴미디어상(리그별 1팀)	상패, 상금(각 50만원)	홍보.마케팅 활동 우수 클럽
	최다관중상(최대 2팀)	상패, 상금(1백만원_차등)	유료 관중 최다 클럽
	베스트 운영상(리그별 1팀)	상패, 상금(각 50만원)	리그 운영 활동 우수 클럽

2. 개인상

리그	항목	시상내역	평가기준
K3리그	최우수지도자(감독)	트로피, 상금(150만원)	제21조 3항에 의거
	최우수지도자(코치)	트로피, 상금(1백만원)	
	득점상 (1명)	트로피, 상금(2백만원)	
	도움상 (1명)	트로피, 상금(1백만원)	
	최우수선수 (1명)	트로피, 상금(2백만원)	
	영플레이어 (1명)	트로피, 상금(50만원)	
	베스트11 (11명)	트로피, 상금(각 50만원)	
	심판상 (주심1, 부심1)	트로피	
K4리그	최우수지도자(감독)	트로피, 상금(1백만원)	
	득점상 (1명)	트로피, 상금(1백만원)	
	도움상 (1명)	트로피, 상금(50만원)	
	최우수선수 (1명)	트로피, 상금(1백만원)	
	영플레이어 (1명)	트로피, 상금(50만원)	
	심판상 (주심1, 부심1)	트로피	

3. 기타사항

- ① 각 리그의 최우수지도자상은 각 리그 우승팀의 감독 및 코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리그의 득점상, 도움상은 정규리그 기록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③ K3리그 베스트 11은 정규리그 경기 수의 50% 이상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각 참가팀의 지도자, 주장 선수, 사무국 투표로 선정하며, 베스트11으로 선정된 선수 중 최다 득표한 선수를 K3리그의 최우수선수로 선정한다.
- ④ K4리그 최우수선수는 정규리그 경기 수의 50% 이상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각 참가팀의 지도자, 주장 선수, 사무국 투표로 선정한다.
- ⑤ 각 리그의 영플레이어상은 U23선수 중 정규리그 경기 수의 50% 이상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각 참가팀의 지도자, 주장 선수, 사무국 투표로 선정한다. 단, 리그 전체에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리그운영본부에서 최종 선정한다.
- ⑥ 제2항 ~ 제5항의 개인상 수상자 선정시 경기기록 및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출전 경기수 - 출전 시간」순으로 결정한다.
- ⑦ 각 리그의 단체상은 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리그운영본부에서 최종 선정한다.
- ⑧ 최우수심판상은 심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리그운영본부에서 최종 선정한다.
- ⑨ 최다관중상은 유료 관중 제도를 운영하는 구단에 한하여 최대 2팀까지 시상한다.

- ⑩ 제1항 ~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자 또는 클럽이 협회의 징계를 받은 경우 시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⑪ 제1항 ~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자 또는 클럽은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리그운영본부에서 해당 수상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최종 선정할 수 있다.
- ⑫ 리그 최종라운드까지 우승팀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우승트로피는 최종라운드 개최 전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2팀에 대해서만 준비되며, 그 하위 팀이 우승했을 경우 보드로 대체 후 트로피는 추후 수여한다. 또한, 우승이 조기 확정된 경우 해당 클럽이 희망하는 홈 경기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 경기출전 및 자격

1. 본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 및 참가신청을 완료한 선수와 지도자에 한하여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2. 협회에 등록을 완료한 임원 중 참가신청이 완료된 자만이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3. 지도자와 선수는 업무일 기준 경기 전일 18시 이전까지 참가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벤치 착석 가능하다. 단, 일요일 경기의 경우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참가신청 하여야 한다.
4. 선수의 출전
 - ① 모든 선수는 반드시 KFA 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 시에는 출전할 수 없다.
 - ② 클럽은 경기 개시 60분 전까지 출전선수명단(벤치 착석 팀스태프, 팀지원스태프 및 임원, 선발출전 11명, 교체대상 9명 표시)을 경기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출전선수명단 제출 후, 선발출전 명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출된 출전선수 11명과 교체대상 9명에 한하여 허용하며, 경기 개시 전까지 경기감독관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선수 교체로 간주하지 않으며, 당초 선발 출전 선수는 해당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④ 출전선수명단의 교체 선수가 선수를 대신하여 경기를 시작하고, 주심이 이 변경에 대해 통보 받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가. 주심은 그 명단의 교체 선수가 계속 플레이하는 것을 허용한다.
 - 나. 그 명단의 교체선수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 다. 출전하기로 했던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될 수 있다.
 - 라. 교체허용 선수 숫자는 감소하지 않는다.
 - 마. 주심은 이에 대하여 협회에 보고한다.
 - ⑤ 선수 교체가 하프타임 휴식 중 또는 연장전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그 절차는 경기가 재개되기 전에 완료되어야한다. 만약 주심이 교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그 교체선수를 처벌하지 않고 플레

이를 계속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협회에 보고 한다.

- ⑥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선발출전 선수, 교체 선수)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 해당 선수는 기존 출전 선수와 즉시 교체하여 경기를 진행하며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경기 종료 후 위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⑦ 선수의 유니폼 배번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번호와 동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교체하여 착용한 후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 ⑧ 선수교체는 5명까지 가능하며, 교체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한다. 단, 하프타임 교체는 교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⑨ 출전선수명단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U23선수(2002.01.01이후 출생자)가 최소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U23 선수가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출전 선수 명단 수가 감소한다. (U23 선수가 1명 포함될 경우, 출전선수명단은 19명으로 하며, U23 선수가 전혀 포함 되지 않을 경우 출전 선수 명단은 17명으로 한다)
- ⑩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된 U23 선수 1명은 의무적으로 선발 출전해야 한다. U23 선수가 의무 선발 출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선수 교체 가능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한다.

구분	U23세 출전 선수 명단 *미포함 시 교체 명단 수 감소		U23세 의무 선발 출전 *미포함 시 교체 수 감소	
	U23 포함 수	출전 제출 인원	의무선발	교체출전
K3리그 K4리그	0명	17명	0명	4명
	1명	18명	0명	4명
			1명	5명
	2명	19명	0명	4명
			1명	5명
	3명	20명	0명	4명
			1명	5명

- ⑪ 외국국적 선수는 팀당 최대 4명까지 출전 가능하다.
- ⑫ 보충역 선수는 평일 경기(단, 법정 공휴일 제외)에 참가할 수 없다.
- ⑬ 경기 전 공식 워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클럽별 선수 인원은 총 23명으로 제한한다.

6. 지도자의 출전

- ① K3.K4리그 등록 기준을 충족한 지도자 2인 이상 반드시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 ② 3회 이상 벤치 미 착석시 해당 지도자의 등록 및 참가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구단은 공정

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도자의 벤치 착석이 불가할 경우, 업무일 기준 해당 경기 2일 전까지 클럽 명의의 공문을 통하여 사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 ④ 징계중인 지도자의 벤치 미 착석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 ⑤ 징계중인 코칭스태프(원정팀 포함)가 경기를 관전하고자 할 경우, 홈 클럽은 본부석 측 좌석 제공하고, 해당 코칭스태프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⑥ 상기 사항을 위반한 코칭스태프에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7. 벤치 착석(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인원 중 KFA 등록증을 지참한 자에 한함)

구분	대상	비고
선수	선발 출전 11명, 교체 대상 9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착석 불가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필수) 감독 1인, 코치 1인 (선택) 피지컬코치 1인	- 코칭스태프, 팀지원스태프 최대13명 까지 착석 - 구단 대표자 및 기타 임원은 착석 불가
	(필수) 팀 매니저 1인 (필수) 의무트레이너 1인 (선택) 팀닥터(주치의), 통역 등	

제23조 (뇌진탕 교체)

1. 각 팀은 경기당 최대 1명의 ‘뇌진탕 교체’를 할 수 있다.
2. ‘뇌진탕 교체’는 기존 교체 선수 숫자와 무관하다.
3. 뇌진탕 또는 뇌진탕 증세로 의심되는 선수는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선수대기실 혹은 의료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4. ‘뇌진탕 교체’ 사용시 상대팀도 ‘추가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팀의 교체 사유는 ‘뇌진탕’ 증상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뇌진탕 교체’를 위해 일반 교체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팀은 추가 교체 기회가 없다.
5. ‘뇌진탕 교체’는 소속팀이 결정하며 심판진은 ‘뇌진탕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뇌진탕 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심판진은 경기 종료 후 심판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뇌진탕 교체’와 ‘추가 교체’는 협회가 지정한 교체 용지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7. ‘뇌진탕 교체’의 경우라도 외국인 선수 출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뇌진탕 교체'된 선수의 경기 출전은 충분한 휴식과 의료 검사 및 치료를 받은 후 소속팀에서 결정한다.

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IFAB 경기규칙 및 ‘뇌진탕 교체’ FIFA 프로토콜 최신판을 따른다.

제24조 안전

1. 홈 클럽은 경기장 개문 시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2. 협회, 홈 또는 원정 클럽, 선수, 팀 임원,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클럽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경기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3.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팀 임원을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은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4. 홈 경기 개최 시 홈 클럽은 아래의 안전 사항을 경기 시간 60분 전까지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응급 구조인력 배치 :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 가. K3리그 : 2명 이상
 - 나. K4리그 1명 이상
 - ⑧ 응급 구조차량 배치 : 자동제세동기(AED), 산소호흡기가 비치된 구급차량
 - 가. K3리그 : 2대 이상
 - 나. K4리그 1대 이상
 - ⑨ 배치된 구급차가 경기 중 긴급한 후송 상황으로 경기장을 떠날 경우를 대비하여 홈팀은 예비차량(사무국 차량)을 반드시 준비하고 해당 차량에 “구급차 예비차량”임을 명확히 표시한 후 경기 중 대기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중 경기 시 관중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 추가 배치를 적극 권장한다.
5.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소속 선수의 건강 상태(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등)를 반드시 체크한 후 경기에 출전시켜야 한다.
6. 선수단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쿨링 브레이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혹서기 기온상승에 따라 WBGT(체감 온도 지수) 30℃ 전, 후일 경우 진행할 수 있다.
 - ② 경기감독관 및 해당 경기의 심판진이 본 제도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팀에 통보한다.
 - ③ 전후반 각 1회씩 경기개시 후 30분 전후 아웃 오브 플레이 시 시행함을 권장하며, 휴식 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7. 클럽은 선수단 및 관중의 안전을 위한 용역(보안·안전 전문)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8. 리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염병 등의 발병 또는 발병이 우려될 경우 협회는 안전을 위해 모

든 클럽 또는 특정 클럽에 전수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해당 클럽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경기일정

공식경기의 경기일정은 협회의 결정에 따르되, 특수한 경우에는 각 클럽과 협의 후 협회가 결정한다.

제26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 경기 개최일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 일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일에 개최되는 경기는 양 팀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협회는 중계방송 등 기타 사정에 따라 경기 개최일을 변경 할 수 있다.

구분	정규리그	승격플레이오프(승강결정전)
K3리그	수·금·토·일요일	토·일요일
K4리그	토·일요일 / 법정공휴일	

- 경기개시 시간은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는 중계방송 등의 기타 사정에 따라 경기 개최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구분	조도 800 lux 이하	조도 800 lux 이상	비고
2월~5월	13:00~16:00	13:00 이후	
6월~8월	16:00~18:00	16:00 이후	
9월~10월	13:00~16:00	13:00 이후	
11월~12월	13:00~15:00	13:00~15:00	야간경기 불가

- 각 리그의 최종전은 14시 동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중계방송 등의 기타 사정에 따라 협회가 변경할 수 있다.
- 공식경기의 일시, 개최지 변경은 해당 클럽 간의 합의 후 협회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협회가 심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협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일정변경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서 부담한다.
- 홈 클럽이 경기 일정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경기 개최 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원정 클럽의 동의를 득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협회는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해당 경기 3일 전까지 양 클럽에 통보 하여야 한다.
- 홈경기 일정 변경 건이 전체 홈경기 일정의 30%가 넘을 경우 차기연도 홈경기 박탈, 리그 참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7. 홈 클럽이 홈경기를 포기할 경우 리그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되며, 3회 이상 포기할 경우 차기연도 홈 경기 박탈, 리그 참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8. 홈 클럽이 홈경기 개최 포기 시 원정 클럽에게 홈경기 개최권이 주어지며, 원정 클럽도 홈경기 개최가 불가할 경우 협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중립경기를 개최하며, 경기 운영은 기존 홈 클럽에서 담당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홈 클럽에서 부담한다.
9. 원정 클럽이 경기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홈 클럽의 동의 공문을 첨부하여 개최일 7일 전까지 협회에 공문 신청하여야 한다. 단, 경기 개최일 7일 이내 원정 클럽의 일정 변경 요청은 불가하다.
10. 참가 클럽이 협회의 규정 및 방침에 준수하고자 시즌 중 홈 경기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실사 및 승인 절차에 따라 홈 경기장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6항의 변경 비율 산출 시 적용되지 않는다.

제27조 경기시간 준수

1. 모든 클럽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 시간(킥오프 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하프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양 팀 출전선수는 후반전 출전을 위해 후반전 개시 3분전까지 심판진과 함께 대기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2. 클럽이 경기시작 시간 또는 하프타임 종료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기시작 또는 재개가 지연될 경우, 해당 클럽은 사유서를 첨부한 공문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회 이상 미준수 시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3. 홈 클럽은 경기 개시 90분 전까지 당일 경기 카운트다운을 경기감독관에게 제출 및 승인 받아야 하며, 감독관 승인 후 심판진, 원정 클럽, 중계팀(편성 시)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경기 카운트다운에는 경기 운영, 구단 행사에 대한 시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몰수

1.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클럽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클럽은 몰수 처리된다.
 - ① 경기 개시 15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 ② 등록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 ③ 참가신청서 기재되지 않은 등록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 ④ 경기 개시 15분 전까지 KFA 등록증 소지자가 7명 미만일 경우
 - ⑤ 경기 중 각종 사유로 인하여 팀이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뒤 경기감독관 또는 심판진으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 ⑥ 위 '5'목의 상황에서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였으나, 경기 재개 후 재차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뒤, 감독관 등으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주어진 3분 중에서 잔여 시간 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
 - ⑦ 다른 선수의 KFA 등록증을 제출하여 경기에 출전한 경우
 - ⑧ 보충역 선수가 협회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에 출전한 경우
 - ⑨ 그 외 참가 자격 위반 행위나 경기 포기 행위를 한 경우
4. 몰수 클럽에 대해서는 「패」처리하며, 상대 클럽에게는 「3:0 승」으로 처리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다. 단, 3골차 이상으로 승리했거나 이기고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5. 몰수 처리 경기라 하더라도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인정한다.

제29조 실격

1. 실격이라 함은 본 대회 모든 경기에 대한 클럽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클럽은 협회 공정소위원회 회부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실격 처리될 수 있다.
 - ① 대회 참가신청 후 전체일정에 대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② 정규리그 잔여 경기에 더 이상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 ③ 정규리그에서 2회 이상 몰수처리를 당한 경우
 - ④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리그 참가 자격 정지 및 박탈이 결정된 경우
3. 정규리그 전체 경기 수의 2/3이상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실격 클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실격 클럽과의 잔여경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리그에서 얻은 승점 및 스코어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4. 정규리그 전체 경기 수의 2/3이상을 수행하였을 때, 실격 클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격 클럽과의 이전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경기 상대팀에게 「3:0 승」으로 처리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다.
5. 승강결정전에서 승리한 클럽이 실격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클럽은 실격처리하며, 상대팀은 소생하지 못한다.
6. 실격 처리 경기라 하더라도 양 팀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인정한다.

제30조 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제재

1. 선수에 대한 제재

① 경고

가. 최초 3회 경고 누적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3회 누적 이후에는 2회 누적 시 다음 1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나. 경기 중 1회 경고를 받은 선수가 경고 없이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다. 경고를 1회 받은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2회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라. 위의 '다음 경기'라 함은 경기번호에 상관없이 해당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를 말한다.

마. 정규리그에서 받은 경고는 승강플레이오프에 연계 적용되지 않는다.

바. 선수가 리그 중 동일 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도 기존의 경고는 연계 적용된다.

② 퇴장

가. 경기 중 퇴장 시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퇴장사유에 따라 공정소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나. 경기 중 경고 2회 누적으로 인한 퇴장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다. 위의 '다음 경기'라 함은 경기번호에 상관없이 해당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를 말한다.

라. 정규리그에서 받은 퇴장은 승강플레이오프에 연계 적용된다.

마. 승강플레이오프에서 받은 퇴장은 승강플레이오프내 다음 경기가 있을 경우 연계 적용된다.

바. 선수가 리그 중 동일 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도 퇴장은 연계 적용된다.

2. 팀 및 임원에 대한 제재

- ① 최초 3회 경고 누적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3회 누적 이후에는 2회 누적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 ② 경기 중 퇴장 당한 지도자 및 임원은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퇴장사유에 따라 공정소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시설 및 기물파괴, 폭력조장 및 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지도자 및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④ 경기 중 팀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지도자는 즉시 퇴장조치 하고,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⑤ 징계중인 지도자는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도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리그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⑥ 지도자 외의 임원이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 지도 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시 퇴장조치 하고, 리그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⑦ 팀 의무로 등록된 자가 당일 해당 클럽 경기 중 벤치에 착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은 리그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⑧ 팀 임원, 스태프 또는 선수가 온·오프라인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리그 또는 특정 클럽 비하,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등 협회 또는 리그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한 자는 리그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⑨ 경기중 앰프(음향기기 일체), 각종 호각류, 레이저빔, 홍염 및 관중의 난입 및 기타 적절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한 응원 등 경기진행 및 선수단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하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 ⑩ 징계중인 자의 징계수위별 경기 중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필드지역	경기운영지역	관중석		비고
	필드, 벤치, 워밍업존	선수대기실, 입장터널, VIP실 등	무관중	유관중	
자격 정지	불가	불가	불가	가능	
출전 정지	불가	가능	가능	가능	

3. 기타사항

- ①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소위원회에서는 해당 클럽, 선수 또는 임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② 경기 또는 경기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경기감독관은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경기 감독관의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클럽 또는 당사자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 ③ 클럽은 소속 선수 및 임원의 징계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해당 클럽에서 감수한다.
- ④ 공정소위원회의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에 연계 적용한다.

제31조 제소

1.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클럽 명의의 공문으로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2. 경기 중 제소는 불가하며,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2조 경기중지 결정

1.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문제 또는 사고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 경기 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재경기

1. 악천후, 천재지변, 시설미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 될 경우, 해당 경기를 ‘순연 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2. 홈 클럽의 귀책사유(준비 부족, 시설 점검 미흡, 경기 운영 미비 등)로 인하여 순연경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구단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3. 재경기는 익일 우선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일시 및 장소는 협회에서 결정한다.
4. 재경기는 경기가 중단된 시점부터 재개한다.
 - ①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여야 한다.
 - ② 순연경기에서 발생한 득점, 경고 및 퇴장, 교체 기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③ 순연경기의 출전 선수가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 교체대상 선수 명단 내에서 교체 가능하며, 이는 선수 교체로 인정되며, 교체를 모두 소진한 클럽의 선수가 부상 등의 사유로 재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 양 클럽에 교체 인원을 한 명씩 추가로 부여한다.

제34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 보상

1. 홈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가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홈 클럽은 원정 클럽이 지출한 경비 전액(교통비, 숙박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원정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가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은 홈 클럽에 발생한 경비 전액(경기운영 비용 및 입장권 환불 수수료,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중계경기 시 홈 또는 원정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식경기가 취소 또는 중단 되었을 경우 해당 클럽은 해당 경기 중계제작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K3 리그 적립 계좌’로 별도 관리하여 추후 리그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4. 원정 클럽의 임원, 지도자, 선수 등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홈 클럽 경기장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은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5. 상기 1항, 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도핑

1.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ad.or.kr, 이하 'KADA')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리그 기간 중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 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치료를 위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할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이하“TUE”)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 출전 20일 전까지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협회 등록팀 소속 선수 및 관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 의무,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도핑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KADA의 검사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5. 도핑검사 후 금지약물이 검출될 경우 KADA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며,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장 장비

제36조 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

1. 클럽은 협회에 등록하고 승인된 유니폼만 착용하여야 한다.
2. 클럽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유니폼의 색상 및 시안에 대한 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1차 - 유니폼 색상 : 필드, GK 각 유니폼별 상/하의, 스타킹 색상 신청
 - ② 2차 - 유니폼 시안 : 1목에 따라 승인된 색상으로 제작된 시안 신청
 - ③ 필드 유니폼은 주·보조 유니폼을, GK 유니폼은 주·보조·써드 유니폼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3. 시즌 중 유니폼 색상은 변경할 수 없다. 단, 디자인, 광고 변경 및 기념유니폼 제작을 하고자 할 경우, 경기시작 7일 전까지 유니폼 변경 신청서, 유니폼 샘플(또는 디자인 시안) 1벌을 협회에 제출하여 유니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유니폼 색상 및 문자 표기

1. 보조 유니폼은 주 유니폼과 명확하게 대비되는 연한색(흰색 권장)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스트라이프 무늬는 주 유니폼이나 보조 유니폼(필드 및 GK 포함) 중 한 디자인에만 적용 가능하다.
2. 스타킹의 색상은 상·하의 색상 중 한 가지 색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주 유니폼 상/하의 또는 스타킹에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두 가지 색상 모두 보조 유니폼에 포함될 수 없다.
3. 클럽 유니폼에는 선수 개개인의 개별 광고, 캠페인 등 기타 문구를 별도 등록하여 착용할 수 없다.
4. 기능성 의류(타이즈 등)를 착용하고자 할 때에는 유니폼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착용해야 하고, 테이핑 사용 시 스타킹 색상과 동일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 ① 상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유니폼 상의 소매의 주색상과 같거나, 상의 소매의 문양/색상 조합으로 정확히 복제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유니폼 상의 소매 부분의 주색상이 상대팀 유니폼의 주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유니폼 상의의 주 색상으로 착용할 수 있다.
- ③ 하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반드시 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의 주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제38조 착용 의무

- 1. 경기에 참가하는 각 클럽 선수는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유니폼(색상, 디자인, 광고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2. 클럽은 모든 경기에 주 유니폼과 보조 유니폼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경기 당일 심판진 유니폼 색상과 아래의 배정 기준을 고려하여 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한다.

우선 순위	홈 팀	원정 팀	비고
1	주 유니폼	보조 유니폼	
2	주 유니폼	주 유니폼	
3	주 유니폼	주+보조 유니폼 혼합	
4	보조 유니폼	주 또는 보조 유니폼	

- 3. 벤치에 착석하는 선수는 반드시 리그 전용 빙스를 착용하여야 한다. 홈·원정 클럽은 모든 경기에 협회에서 제공하는 주·보조 빙스를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당일 클럽별 빙스 색상은 경기 90분 전 경기감독관이 결정한다.
- 4. 클럽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빙스를 반드시 활용하여야 한다.

제39조 선수 이름, 배번 및 마크

- 1. 선수 유니폼에는 반드시 선수 이름과 배번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수 이름 표기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표기되어야 한다.

국문		영문		규격
성 이름	홍길동	성(대문자) + 이름 전체	HONG Gildong	높이 5cm~7.5cm

- 2. 선수 이름은 유니폼 상의 뒷면에, 배번은 상의 뒷면과 하의 앞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 3. 선수의 배번은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배번의 색상은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 4. 배번의 규격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위치
상의 앞면	10cm~15cm	클럽의 선택에 따라 표시
상의 뒷면(필수)	25cm~35cm	뒷면 정중앙 부분에 위치하도록 표시
하의 앞면(필수)	10cm~15cm	클럽의 선택에 따라 앞면 아래에 표시

5. 유니폼에는 클럽을 대표(상징)하는 로고 또는 엠블럼, 마스코트 등의 표식을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위치와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위치
상의 앞면	200㎢ 이하	클럽의 선택에 따라 가슴부분 1곳 표시
하의 앞면	50㎢ 이하	오른쪽 또는 왼쪽 앞부분 아래 1곳
스타킹	25㎢ 이하	클럽에 따라 위치 선택, 양쪽 모두 가능

6. 클럽은 국내외 다른 클럽의 엠블럼을 유니폼에 부착할 수 없다.

제40조 협회 패치 및 클럽 광고

1. 클럽은 유니폼 상의 왼쪽소매 측면 정중앙에 리그 공식 패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리그 패치 하단에는 리스펙트 캠페인(가로형) 패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니폼에는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유니폼에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 광고를 표시할 경우, 위치, 수량, 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식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유니폼에 부착된 광고는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가 배번, 연고지역 명, 협회의 의무 부착물에 방해를 줄 경우 협회는 클럽에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클럽은 요청 15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4. K3리그 또는 K4리그 전년도 우승 클럽의 경우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우승팀 패치 시안을 활용하여야 하며 구 K3리그 또는 내셔널리그 우승 기념 패치의 경우 최대 가로 길이 10cm를 넘길 수 없다.

제41조 상호, 연고지명 표시

1. 상의, 하의, 스타킹에 유니폼 제작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상호명(브랜드명, 로고, 엠블럼)은 클럽 자율에 따라 그 수량과 크기를 결정하여 표시한다.
2. 연고지명의 표기는 클럽 자율에 따라 영문 또는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42조 기념 유니폼

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창단 기념일 등) 기존 등록 유니폼 이외 별도의 기념 유니폼을 제작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경기 시작일 7일전까지 협회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착용한다.

제43조 전자장비

1. 주장 선수는 반드시 주장 완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2. EPTS 사용을 원하는 경우, FIFA 품질 프로그램(FIFA Quality Programme)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3. 경기장 기술지역(Technical Area)에서 스태프는 선수의 복지와 안전, 전술적/코칭의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형, 이동식, 휴대용 장비 (마이크, 헤드폰, 이어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
4. 선수들(대기 선수/교체된 선수/퇴장 선수 포함)은 전자 장비를 일절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 된다. 단, EPTS장비는 예외로 한다.
5. 허가되지 않은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판정항의 시 기술 지역에서 퇴장 조치한다.

제5장 AD카드 운영

제44조 AD카드

1. AD카드는 임원, 스폰서, 미디어, 스태프, 자원봉사자, 데이터수집관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2. 클럽은 협회에서 AD카드 디자인을 제공하는 경우 홈경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AD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하나, 협회에서 별도의 디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클럽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제작 가능하다.
3. 클럽은 AD카드 소지자의 통행 가능 구역을 경기장 내 주요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협회는 중계스태프, Media, 의료, 볼스태프를 위한 조끼(Bib)를 제작하여 각 클럽에 제공할 수 있으며, 협회에서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는 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활용 가능하다.
5. 협회는 스폰서, 미디어 등의 AD카드를 발행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클럽은 협회가 발행한 AD카드 소지자가 경기장 지정 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징계

제45조 목적

K3·K4리그 운영과 관련 징계의 적절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6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 내 징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 ① 협회에 등록된 클럽, 코칭스태프, 선수, 심판
- ② 각 클럽의 임원 및 직원
- ③ 협회의 지휘 감독의 대상인 단체 및 개인

제47조 공정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정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공정소위원회는 협회의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 협회 대회위원회 위원장과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3. 공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협회의 공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정소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소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협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심의 준비 및 소집 통지, 회의록 작성, 의결 사항 통지 및 보고 등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진행한다.

제48조 공정소위원회 운영

1. 협회는 징계심의 1일 전까지 심의 대상자 또는 팀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징계심의를 공지하며 심의대상자는 공정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공정소위원회의 결정은 긴급 제재이므로 재심 청구 또는 경감,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징계 기준은 '리그 유형별 긴급 제재 징계 기준표'에 따른다.
4. 그 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관련 규정과 AFC, FIFA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2. 본 대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IFAB 경기규칙서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서 결정한다
3. 본 규정은 2025년 시즌에 한하여 적용된다.

별첨 1 유형별 긴급제재 기준표

유형	내용	대상 및 긴급제재 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팀
1. 경기중 일반적 위반행위	심판에 의한 경고 및 퇴장	대회규정과 경기규칙에 의함		
2. 경기관련 특정 위반행위	1. 폭력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승점감점
	2. 폭언, 모욕 및 위협 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3.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 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4. 경기장 무단 난입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5.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2 ~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6. 응원단의 난동 행위 유발 등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 방관한 행위	※ 출전정지 2 ~ 4경기	※ 출전정지 2 ~ 4경기	
	7. 건전한 응원풍토 위반(응원단의 난동, 심판에 대한 항의 등)	-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8. 경기중단 또는 경기지연 행위	※ 출전정지 1 ~ 4경기	※ 출전정지 1 ~ 4경기	
	9. 경기 포기 또는 불참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10. 경기조작 (공여 및 수수)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1. 심판매수 (공여 및 수수)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3. 명예 실추 행위	12. 명예실추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4. 직권남용 행위, 무고 또는 위증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②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무고하는 행위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5. 금전비리행위 등	① 배임, 횡령, 절도 ② 횡응 및 뇌물수수행위 ③ 불법 스카우트 및 거래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6. 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	13.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14. 경미한 불미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15. 이적선수가 활동시기를 위반하여 출전한 행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6. 징계중인 선수의 경기출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7. 징계중인 지도자의 벤치 착석 및 지도행위	-	※ 출전정지 4경기	
	18. 출전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의 출전 행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9. 비 등록 선수의 경기 출전	-	※ 출전정지 4경기	
	20. 수업 무단 불참 또는 수업 시간 중 훈련 및 경기 참가	-	※ 출전정지 4경기	
21. 지도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행정, 의무 등)이 벤치에서 지도한 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7. 성폭력, 성추행 등 행위	①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② 성,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8. 인권침해	언어폭력,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제한 등 부당한 제재행위, 선수 지도 중 출연 또는 음주행위(선수와 대상자에 한정)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9. 기타	<p>가. 본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징계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나. 특히 팀 지도자, 관계자, 학부모 또는 응원단 난동의 경우 ‘승점 감점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p> <p>다. 유형별 긴급제재는 우선 조치사항이며, 사안에 따라 공정위원회에서 추가로 형량의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p> <p>라. 리그 및 대회 등 공정소위원회 유형별 긴급제재 기준 외, 사안에 따라 공정위원회 결정전까지 출전정지 할 수 있다.</p>			